

청구보증상 지급청구와 지급*

- URDG758을 중심으로 -

허 해 관**

-
- I. 서 론
 - II. 지급청구의 개념과 성격
 - III. 지급청구의 주체, 시기, 장소 및 방법
 - IV. 제시서류
 - V. 보증금액과 청구금액 및 보증금의 지급
 - VI. 결 론
-

주제어 : 청구보증, 청구보증통일규칙, URDG, 독립보증, 지급청구

I. 서 론

청구보증(請求保證, demand guarantee)¹⁾은 국제거래에서 상대방의 계약불이행(혹은 계약위반 또는 의무불이행) 위험에 대처하는 수단의 하나로 보증

* 본고는 2011. 12. 10. 개최된 제44회 한국무역상무학 동계세미나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표한 것을 개고한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강사,

1) 이를 흔히 “요구불보증”이라고도 하나,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공식번역본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보증”이라 부르기로 한다. 박세운·한기문·한재필·허해관, 『ICC 청구보증통일규칙』(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 2010) 참조.

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 혹은 standby credit)²⁾과 함께 널리 이용되고 있다. 양자는 그 법적 성격이 독립보증(independent guarantee)³⁾으로 동일하며,⁴⁾ 이는 부종성(附從性)을 갖는 보증(accessory guarantee, 편의상 이를 간단히 ‘부종보증’이라 부르기로 한다)에 대비된다. 이에 양자는 흔히 독립적 은행보증(independent bank guarantee)으로 통칭되고 있다.⁵⁾

그 중에서 청구보증은 일반적으로 지급청구서 및 기타 보증장(保證狀)⁶⁾에 명시된 서류가 보증의 유효기간 내에 보증조건에 일치하게 제시되면 수익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금전(“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보증인의 지급약속을 말한다.⁷⁾ 이는 흔히 국제적인 건설계약이나 턴키계약(turn-key contract), 장·단기의 공급계약⁸⁾에서 시공자 혹은 수주자(contractor)나 공급자(supplier 혹은

2) 이를 “스탠드바이 신용장” 혹은 “스탠바이 신용장”이라고도 하나, 본고는 우리나라 공식 번역본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신용장”이라 부르기로 한다. 박세운·한기문·김상만·허해관, 『보증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 2008) 참조. 보증신용장에 관하여는 1998년 『보증신용장통일규칙』(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98)이 있다.

3) 이는 흔히 “독립적 보증”으로 불리고 있다. 개념체계의 면에서 독립보증은 청구보증과 보증신용장의 상위의 개념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독립보증의 종류로 청구보증과 보증신용장이 있다. 본고에서 독립보증은 이러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4) 양자의 법적 성격과 용도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UN은 1995년 『독립보증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이하 간단히 1995년 UN협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다만 2010년 5월 현재, 그 협약국은 일부 중동, 남미, 아프리카의 8개국에 불과하다. 이 협약에 관하여 상세히는, 박석재, “독립적 보증 및 스탠바이 신용장에 관한 UN협약,” 『상사법연구』 제22권 제5호(한국상사법학회, 2004); 박석재, “독립적 보증 및 스탠바이 신용장에 관한 연구 - 1995년 유엔 협약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11권(한국무역상무학회, 1998.2); 김선국, “독립적 보증 및 스탠바이 신용장에 관한 UN협약,” 『비교사법』 제3권 제1호(한국비교사법학회, 1996) 참조.

5) 다만 그 중에서 보증신용장은 지역적으로 주로 미국(대미거래 포함)에서 사용되고 있다.

6) 실무에서 이는 흔히 보증서(保證書)라 불리고 있다. 그러나 청구보증과 보증신용장은 법적 성격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신용장(信用狀)에 대응하는 보증장(保證狀)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7) Roy Goode, *Guide to the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1992), pp.8-9; 오원석·허해관·김중년 공역(Roy Goode 저), 『국제상업회의소 청구보증통일규칙 가이드』(도서출판 두남, 2008), 2면 참조.

8) 이와 같이 당해 청구보증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기초계약(underlying contract)라 한다.

seller)의 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불완전이행에 대하여 신속한 금전보상으로써 발주자나 매수인을 보호하고자 발행되는 것으로, 국제무역금융(특히 기업금융) 분야에서 필수적인 금융도구의 하나이다.⁹⁾¹⁰⁾ 이때 전자는 지시당사자(instructing party)¹¹⁾로서 보증인에게 보증발행을 의뢰하고, 보증인은 후자를 수익자로 하여 보증을 발행하게 된다.¹²⁾

종래 청구보증에 대하여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1992년에 ICC 간행물 제458호로서 『청구보증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URDG)(이를 간단히 ‘URDG458’이라 한다)을 제정·시행하여 오다가,¹³⁾ 최근 이를 개정하여 지난 2009년 12월 간행물 제758호로 공표하였고, 개정 URDG(이를 ‘URDG758’이라 한다)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¹⁴⁾

9) 오원석·허해관·김중년 공역, 전게서, 역자서문.

10) 실무상 그 종류는 입찰보증(tender guarantee, 혹은 bid guarantee), 이행보증(performance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guarantee, 혹은 repayment guarantee), 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guarantee, 혹은 간단히 유보금보증), 하자보수보증(maintenance guarantee, warranty guarantee) 등 다양하다. 석광현, “국제적 보증의 제문제,” 『무역상무연구』 제17권(한국무역상무학회, 2002.2), 23면 참조. 나아가 청구보증의 종류에 관하여 상세히는 Roeland F. Bertrams, *Bank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de*, Third revised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pp.35-45; 박석재, “국제비즈니스계약에서의 보증수단 및 유형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6권(한국무역상무학회, 2005), 213-218면 참조.

11) URDG758(제2조)은 이와 같이 “보증[...]의 발행을 지시하고, 보증인에 대하여 [...] 상환 책임을 지는 자”를 지시당사자라 정의한다. 이는 법률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보증의뢰인”이라 할 수 있다. 주의할 것으로 URDG758(제2조)은 지시당사자의 개념과 보증신청인(appliant)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에 관하여 상세히는 박세운·한기문·허해관, “개정 『청구보증통일규칙』의 주요내용,” 『국제상학』 제25권 제1호(한국국제상학회, 2010. 3) 195면 참조.

12) 물론 반대로 발주자나 매수인(지시당사자)의 대금지급불이행에 대비하여 시공자/수주자나 공급자를 수익자로 하여 보증이 발행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지급보증(payment guarantee)라 한다.

13) URDG458에 관한 해설서로는, Georges Affaki, *ICC Uniform Rules on Demand Guarantees: A User's Handbook to the URDG*, ICC, 2001; Roy Goode, *Guide to the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1992; 박세운, 『ICC 청구보증통일규칙』 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 2007; 오원석·허해관·김중년 공역(Roy Goode 저), 『국제상업회의소 청구보증통일규칙 가이드』, 도서출판 두남, 2008 참조.

14) URDG758의 소개로는, Georges Affaki, “The shape of the new URDG,” *DClInsight*, Vol.15, No.3 (2009); Roy Goode, “The main issues in the URDG revision,”

기초계약상 불이행이 발생하면 수익자는 보증인에게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급청구와 그에 따른 지급은 보증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URDG758의 시행에 즈음하여 청구보증상 지급청구의 문제를 주로 고찰하면서¹⁵⁾ 그에 따른 보증금 지급의 문제를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문헌에 의하면, 모든 청구보증과 보증신용장을 통틀어 실제로 지급청구가 일어나는 비율은 대략 3-5%에 불과한바,¹⁶⁾ 독립보증상 지급청구가 없는 것은 곧 기초계약상 불이행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와 같이 지급청구 실행비율이 낮은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일 것이다.¹⁷⁾ 이하에서는 먼저 지급청구의 개념과 성격을 살펴본 후(II), 지급청구의 주체, 시기, 장소 및 방법의 문제(III)와 제시서류에 관한 문제(IV)를 고찰한다. 이어 보증금액과 청구금액 및 그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장소, 지급통화의 문제(V)를 고찰한 후, 끝으로 결론으로써 글을 마무리한다(VI).

II. 지급청구의 개념과 성격

1. 지급청구의 개념

DClinsight, Vol.15, No.1 (2009); 박세운·한기문·허해관, 전제논문 참조.

- 15) 구상보증(counter-guarantee)상 지급청구나 지급의 문제는 필요한 경우에 간단히 언급함에 그친다.
- 16) Bertrams, *op. cit.*, p.277. 이러한 점에서 청구보증과 보증신용장은 상업신용장(commercial letter of credit, 혹은 화환신용장)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이러한 차이는 양자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인바, 상업신용장의 수익자인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 이른바 선적서류가 구비되면 항상 개설은행(경우에 따라 확인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신용장대금 지급청구를 통하여 그 매매대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17) 그러나 지급청구 실행비율이 낮은 것이 청구보증이나 보증신용장이 무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독립성과 서류성에 의하여 지지되는 청구보증이나 보증신용장이 발행되거나 개설된 경우에, 보증의뢰인으로서의 만약 자신의 여하한 불이행이 있더라도 그 유효기간 내에는 수익자가 언제든 지급청구를 할 것이므로 기초계약을 준수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히 단순청구보증(simple demand guarantee, 혹은 first demand guarantee)의 경우에, 보증의뢰인으로서의 수익자로부터 지급청구의 위협하에 원래 약정된 바를 초과하는 내용의 이행을 흔히 강요당하게 되는데, 이는 실무상 지급청구의 실행율을 위와 같이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한다(Bertrams, *op. cit.*, p.277).

URDG758은 지급청구(支給請求, demand, 혹은 demand for payment)를 제시(提示, presentation)와 구별하여 정의하는데, 이는 청구보증실무에서 수익자나 보증의뢰인이 지급청구 외의 목적으로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초안기술상 URDG758는 지급청구의 개념을 "보증상 지급을 청구하는 수익자의 서명된 서류"로 정의하나,¹⁸⁾ 본고에서 이를 문맥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도 사용하고, 특별히 서류를 지칭할 때에는 '지급청구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수익자의 지급청구가 있으면, 보증인은 이를 심사한 후 그것이 "일치하는 지급청구"(complying demand)¹⁹⁾인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고²⁰⁾ 불일치한 지급청구인 때에는 지급을 거절하게 된다.²¹⁾

그에 비하여, "제시"는 문맥에 따라 보증상 "서류를 보증인에게 인도하는 것"(즉 행위)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게 인도된 서류"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²²⁾ 제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예컨대, 보증을 만료시키기 위한 것이나 보증금액을 변경시키기 위한 것 등이 있다.²³⁾

2. 보증의 특정

수익자의 지급청구는 보증인의 심사의무를 발동시키는바, 보증인은 지급청구일의 다음날부터 5영업일 내에 그 지급청구를 심사하여 그것이 일치하는 지급청구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²⁴⁾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일치하는 지급

18) URDG758 제2조 지급청구(demand)의 정의 참조.

19) URDG758에서 "일치하는 지급청구"가 되기 위해서는 (i) 당해 보증상 명시된 조건, (ii) URDG758의 규정 및 (iii) 국제표준청구보증관행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그 효력순위에 따라, URDG758의 규정은 보증상의 명시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고, 국제표준청구보증관행은 그러한 명시조건 및 URDG758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20) URDG758 제20조 제b항.

21) 불일치한 지급청구의 경우에, 보증인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URDG758 제24조 참조.

22) URDG758 제2조 제시(presentation)의 정의 참조.

23) 박세운·한기문·한재필·허해관, 전게서, 112면.

청구라고 결정하는 경우에 보증인은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고,²⁵⁾ 만약 일치하는 지급청구가 아니어서 지급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보증인은 지급청구일의 다음날부터 5영업일 내에 지급청구에 대한 거절사실과 거절사유가 된 모든 하자를 기재하여 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²⁶⁾ 이러한 5영업일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그에 따른 거절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 보증인은 당해 지급청구가 불일치한 지급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되며,²⁷⁾ 이를 실권효(失權效, preclusion)라 한다.

이와 같이 지급청구는 서류심사기간과 거절통지기간의 개시를 촉발하기 때문에 수익자가 언제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결정되는지 여하는 중대한 결과를 낳는바, 수익자는 보증인이 그 지급청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과연 어느 보증하에서 그 지급청구를 하는 것인지를 지급청구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보증의 특정(identification of guarantee)이라 한다.²⁸⁾ 특정의 방법으로 보증에 관한 보증인의 참조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이나 보증장의 원본이나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이다.²⁹⁾ 그러한 특정이 누락된다면 보증인으로서의 서류의 심사에 착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서류심사기간은 당해 보증이 특정되는 일자, 즉, 보증특정일(date of identification)부터 개시된다.³⁰⁾

지급청구시에 보증의 특정이 누락되었다면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추완할 수 있지만, 이는 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보증의 특정이 누락된 지급청구의 경우에 보증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³¹⁾ 그 동안에 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24) URDG758 제20조 제a항.

25) URDG758 제20조 제b항.

26) URDG758 제24조 제d항 및 제e항.

27) URDG758 제24조 제f항.

28) URDG758 제14조 제f항 제1문. 이는 신설규정이며, ISP98 제3.03조를 계수한 것으로 이해된다.

29) 박세운·한기문·한재필·허해관, 전게서, 148면.

30) URDG758 제14조 제f항 제2문.

31) URDG758 제14조 제f항 제3문.

3. 각 지급청구의 독립성

URDG758상 수익자의 어떤 불일치한 지급청구나 지급청구의 철회는 다른 지급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또한 불일치한 지급청구에 대하여 보증인이 지급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보증인이 여타의 지급청구가 일치하는 것 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기한 것으로 되지 않는바, 이를 각 지급청구의 독립성(separateness of each demand)이라 한다.³²⁾

따라서 수익자로서는 불일치한 지급청구를 이유로 지급거절통지를 받은 경우에 아직 보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하자를 보완하여 만료 전에 다시 지급청구를 할 수 있고, 설령 지급청구를 철회하였더라도 아직 보증이 만료 되지 않았다면 동일한 지급청구를 거듭 할 수 있다.³³⁾ 또한 보증인의 입장에서도 어떤 지급청구에 대하여 (i)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ii) 하자통지를 불이행하였거나 혹은 (iii) 하자에 대한 보증의뢰인의 권리포기를 수용함으로써 지급을 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하자에 대하여 권리포기를 한 것으로 되지 않으므로 향후 수익자의 다른 지급청구시에 동일한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³⁴⁾

Ⅲ. 지급청구의 주체, 시기, 장소 및 방법

1. 지급청구의 주체

보증상 지급청구권자는 오직 수익자이며, 여기의 수익자는 보증이 양도된 경우에는³⁵⁾ 양수수익자(transferee)³⁶⁾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익자는 기초계

32) URDG758 제18조 참조. 이는 신설규정이며, ISP98 제3.07조를 계수한 것으로 이해된다.

33) 박세운·한기문·한재필·히해관, 전거서, 157면.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보증신용장에 관하여는 James E. Byrne, *The Officia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1998, pp.113-114; 박세운·한기문·김상만·히해관, 『보증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 2008), 114-115면 참조.

34) *Ibid.*

약상 채권자이다. 수익자가 아닌 자가 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불일치한 지급청구가 되는바,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수익자가 발행하여야 하고, 별도의 불이행진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에 이 진술서도 수익자가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대리인이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청구서(불이행진술서 포함)는 수익자가 발행한 것이어야 하고, 이를 대리인이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³⁷⁾ 위임인인 수익자와 수임인인 대리인의 사이의 위임관계에서 청구보증상 지급청구 여부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principal)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이다.³⁸⁾

URDG758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당해 보증의 준거법³⁹⁾상의 문제로서 보증인은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 그 지급청구자가 진정한 수익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⁰⁾ 같은 맥락에서 대리인이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의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¹⁾ 더욱이 이러한 신원

35) 청구보증의 양도(transfer of guarantee)에 대해서는 URDG758 제33조에서 규정한다. 보증의 양도는 보증금채권의 양도(assignment of proceeds)와 구별되어야 하며, 후자는 본질적으로 금전채권의 양도이다.

36) 우리나라 위 URDG758 공식번역은 “transferee”를 간단히 양수인이라 하지 않고 양수수익자라 하는바, 이는 보증금채권의 양수인(assignee)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신용장통일규칙(UCP)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2수익자(second beneficiary)라는 용어를 사용한다(UCP600 제28조 제b항).

37) 동지 Bertrams, *op. cit.*, p.282.

38) *Ibid.*

39) URDG758(제34조 제a항)은 “보증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의 준거법은 보증을 발행한 보증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소재한 장소의 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바, 여기서 “보증을 발행한 보증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소재한 장소의 법”은 간단히 보증인의 영업소소재지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이른바 ‘최밀관련원칙’ 즉 당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그 계약의 준거법이 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한국 국제사법 제26조 참조.

40) 그러나 보증신용장통일규칙(ISP98)은 제4.13조에서 보증신용장 개설인이 제시시에 수익자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진정한 수익자가 아닌 자에게 보증신용장대금이 지급된 경우에, 그 이중지급의 위험을 개설의뢰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수익자가 아닌 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그 후 진정한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가 있으면 개설인은 그에 대하여 결제하여야 하며, 개설의뢰인으로서 개설인에게 두 번 상환하여야 한다(Byrne, *op. cit.*, pp.174-175; 박세운·한기문·김상만·허해관, 전거서, 149면).

확인 은 보증인이 보증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수입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이른바 선관의무)를 다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컨대, 특히, 수익자가 법인임에도, 당해 지급청구를 담당한 자가 그 법인이 아닌 개인의 명의로 된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보증인은 그 자의 권한에 대해 문의·조회하여야 한다.⁴²⁾

수익자의 지위가 법의 작용에 의하여 승계되는 경우, 예컨대 수익자 회사가 인수·합병되거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URDG758은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바,⁴³⁾ 생각건대, 당해 보증의 준거법의 문제로서 수익자의 승계인은 자신의 명의로 보증상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승계인은 자신이 그 수익자의 진정한 법적 승계인임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⁴⁾

2. 지급청구시기

일치하는 지급청구가 되기 위하여 지급청구는 보증이 만료되기 전에, 즉, 당해 보증의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⁴⁵⁾ 유효기간은 그 시기(始期)와 종기(終期)가 있다.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보증의 발행시부터”(from the time of issue of the guarantee)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⁴⁶⁾ URDG758은

41) Bertrams, *op. cit.*, p.282.

42) *Ibid.*

43) ISP98은 “법의 작용에 의한 양도”(transfer by operation of law)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6.11조-제6.14조), 수익자의 사망이나 능력상실, 파산 기타 도산, 회사의 인수·합병 또는 상호변경 기타 그와 유사한 상황과 같이, 승계에 의하여 지급청구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그 승계인으로 하여금 양수수익자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증신용장에서 명시한 서류 (“필요서류”) 이외의 서류로서 문면상 승계의 사실을 표시하는 서류(“추가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나아가 개설인이나 확인인으로 하여금 그 제시이자 진정한 승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더 이상의 추가서류를 요구하거나, 자신에 대한 보호 내지 손실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제시인에게 추가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다.

44) 동지, Bertrams, *op. cit.*, p.282.

45) URDG758 제14조 제a항 제ii호.

46) URDG758 제4조 제c항.

보증의 발행시점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보증은 보증인의 통제를 벗어나는 때에 발행된다.⁴⁷⁾ 그러나 보증에서 보증발행일 후의 특정한 일자나 사건시부터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경우와 같이, 보증상 지급청구가능시점을 장래의 어느 시기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수익자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비로소 지급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⁴⁸⁾ 한편 지급청구가 보증의 만료 이전(on or before expiry)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지급청구서류가 후술하는 지급청구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컨대, 수익자가 특송업체를 이용하여 지급청구서류를 발송한 경우에 유효기간의 준수여부는 그 발송시점이 아니라 그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⁴⁹⁾ 보증의 만료(expiry)는 만료일(expiry date)⁵⁰⁾과 만료사건(expiry event)⁵¹⁾의 양자를 포함하는 개념인바,⁵²⁾ 보증상 양자(만료일 및 만료사건)가 모두 명시된 경우에 보증은 그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사유에 의하여 만료된다.⁵³⁾ 물론 여기의 만료는 만약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이러한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의할 것으로, 지급청구 자체가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보증의뢰인의 기초계약상 불이행이 그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⁵⁴⁾ 따라서 실령 기초계약상 불이행이 유효기간 내에 발생하였더라도,

47) URDG758 제4조 제a항.

48) URDG758 제4조 제c항. 보증상 이러한 정지조건의 다양한 예로는 오원석·송정남·윤영미,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독립보증계약 체결시 당사자의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5권 제4호(한국국제상학회, 2010), 76-77면 참조.

49) 동지, Bertrams, *op. cit.*, p.283. 또한 URDG458상의 같은 취지의 논의로 Affaki, *op. cit.* (2001), p.78.

50) 만료일은 “제시가 허용되는 최종일로 보증상 명시된 일자”를 의미한다(URDG758 제2조 만료일의 정의).

51) 만료사건은 그 사건이 발생한 즉시 또는 그 후의 일정한 기간 내에 보증조건상 보증의 만료를 초래하는 사건을 의미한다(URDG758 제2조 만료사건의 정의 참조). 실무상 다양한 보증의 종류별 만료사건의 소개로는 오원석·송정남·윤영미, 전계논문, 80-81면; Affaki, *op. cit.* (2001), p.104 참조.

52) URDG758 제2조 만료의 정의 참조.

53) *Ibid.*

54) 동지, Bertrams, *op. cit.*, p.302.

그 유효기간의 만료 후에 비로소 지급청구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불일치한 지급청구가 된다.⁵⁵⁾ 같은 맥락에서, 기초계약이 아직 완료되거나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수익자가 ‘지급 또는 연장의 선택부지급청구’(pay or extend demand)를 하거나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조건변경(amendment) 절차 등을 취하는 것을 간과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보증이 만료된 후에 기초계약상 보증의 퇴인의 불이행이 발생한다면 수익자는 유효한 지급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3. 지급청구장소

수익자는 보증상 명시된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에서 지급청구를 하여야 하되, 그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의 발행지(place of issue)에서 하여야 한다.⁵⁶⁾ 여기의 지급청구장소는 대개 보증은행, 특히 보증이 발행된 지점(支店, branch)이다. 이러한 지급청구장소를 위반하면 불일치한 지급청구가 된다.

따라서 비록 동일한 은행(법인)의 지점들은 법적으로 동일한 법인격을 구성하지만, 그 은행의 다른 지점에 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지급청구장소의 위반이 되며, 만약 그 지점이 (스스로 또는 수익자의 요청으로) 지급청구장소인 지점으로 지급청구서류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보증의 유효기간이 만료한다면 수익자는 지급을 거절당하게 된다.⁵⁷⁾ 특히 수익자가 보증은행의 해외에 있는 어느 지점에 지급청구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자국에 있는 지점에 제시하면서 이를 그 해외지점에 전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러한 위험은 커지게 된다.⁵⁸⁾ 다만, 그 국내지점이 지급청구서류를 전달하면서 상당히 지연하거나 비효율적인 전달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⁵⁹⁾

55) *Ibid.*

56) URDG758 제14조 제a항 제i호.

57) Bertrams, *op. cit.*, p.283.

58) Bertrams, *op. cit.*, pp.283-284; Affaki, *op. cit.* (2001), p.76.

4. 지급청구방법

청구보증의 서류성(documentary character)에 따라, 수익자의 지급청구는 서류제시(書類提示)의 방법에 의하게 되며,⁶⁰⁾ 구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URDG758에서 여기의 서류는 종래의 종이로 된 형태의 서류(“종이서류”)와 전자적 형태의 서류(“전자서류”)를 포함한다.⁶¹⁾

보증에서 지급청구를 종이서류 또는 전자서류로 하여야 하는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수익자는 종이서류로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⁶²⁾ 한편 보증에서 종이서류로 지급청구를 하도록 요구하되 그 종이서류의 인도방법(mode of delivery)을 특정하면서 다른 방법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은 경우에 수익자는 다른 인도방법을 사용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⁶³⁾ 그러나 보증에서 전자서류로써 지급청구를 하도록 명시하는 때에는 지급청구를 위한 형식(format), 데이터전송시스템 및 전자주소도 함께 명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명시가 누락된 경우에 지급청구는 인증이 가능한 전자서류나 종이서류로 할 수 있다.⁶⁴⁾ 인증이 불가능한 전자서류는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⁶⁵⁾

IV. 제시서류

1. 지급청구서와 보강진술서

59) *Ibid.*

60) 사실 대부분의 보증에서 지급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된다. Bertrams, *op. cit.*, 284.

61) URDG758 제2조는 “서류”(document)의 용어를 “... 종이 또는 ... 유형의 형태로 재생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으로 정의한다.

62) URDG758 제14조 제e항.

63) URDG758 제14조 제d항.

64) URDG758 제14조 제c항.

65) *Ibid.*

보증상 명시된 바에 따라, 수익자는 지급청구서만을 제시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보증을 단순청구보증(simple demand guarantee 또는 first demand guarantee)이라 한다.⁶⁶⁾ 그밖에 보증상 명시된 서류가 더 있으면 수익자는 그러한 서류들도 지급청구서와 함께 제시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지급청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일체의 서류를 필요서류(required document)라 한다.⁶⁷⁾ 일반적으로, 청구보증실무상 지급청구서 외의 필요서류로는 예컨대 수익자가 발행하는 불이행진술서, 제3자가 발행하는 불이행에 관한 진술서나 증명서, 법원의 판결서 또는 중재판정서 등이 있는데, 이들은 보증의뢰인의 기초계약상 불이행을 진술 또는 증명하기 위한 서류이다.⁶⁸⁾

그 중에서 특히 수익자의 불이행진술에 관하여 URDG758은 중요한 규정을 두는바, 보강진술(supporting statement)에 관한 제15조가 그것이다.⁶⁹⁾ 그에 의하면, 수익자의 지급청구는 보증상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보증의뢰인의 기초관계상 의무위반의 내용을 표시하는 수익자의 진술(“보강진술”)에 의하여 보강되어야 한다.⁷⁰⁾ 여기의 보강진술은 그 지급청구서 내에 기재될 수도 있고, 그 지급청구서에 첨부되거나 특정적으로 연결되는 별도의 서명된 서류(“보강진술서”)에 기재될 수 있다.⁷¹⁾ 전자의 경우에는 지급청구서만 제시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필요서류로서 지급청구서 및 보강진술서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⁷²⁾ 이러한 규정은 수익자의 부당청구(unfair calling)에 대비한

66) 이러한 단순청구보증의 경우에 당사자(수익자, 보증의뢰인, 보증은행)간의 리스크의 배분과 그에 대한 대처에 관하여는, 오원석·김필준·이운창, “청구보증상 지급메커니즘에 따른 실무상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제46권(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141-144면 참조.

67) 박세운·한기문·한재필·허해관, 전제서, 151면. 다만 필요서류라는 용어는 그 전의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의 공식변역(제3.02조, 제6.04조 등)에서 먼저 채택되었다.

68) Peter Ellinger & Dora Neo, *The Law and Practice of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Hart Publishing, 2010), p.326.

69) 이는 URDG458 제20조를 견지한 것이다.

70) URDG758 제15조 제a항 제1문.

71) URDG758 제15조 제a항 제2문.

72) URDG758 제15조 제b항에서는, 구상보증에 관하여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구상보증에서는 그 구상보증의 수익자인 보증인이 ‘(원보증의 보증인으

안전장치를 제공하면서도 아울러 청구보증의 서류적 성격과 지급의 신속이행을 견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⁷³⁾ 다만 수익자로서는 보증상 명시되지 않은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므로 불이행진술(서)의 누락에 의하여 지급거절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강진술에 관한 규정은 당해 보증에서 그러한 요건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며, 따라서 수익자로서는 예컨대 “The supporting statement under article 15(a) is excluded.”(제15조 제a항에 따른 보강진술은 배제된다.)와 같은 조항을 보증장에 명시하도록 요구하여 대처할 수 있다.⁷⁴⁾

일자에 관하여 보자면, 지급청구(서)나 보강진술(서)은 수익자가 지급청구를 제시할 권리를 갖는 일자 전의 일자로 일부(日附)되어서는 아니 된다.⁷⁵⁾ 따라서 보증실무에서, 수익자가 보증의 유효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혹은 보증상 지급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기초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하기도 전에 수익자가 미리 지급청구서와 보강진술서를 작성(일자표기 포함)하여 두었다가 추후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때에 이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⁷⁶⁾ 또한 지급청구서와 보강진술서 기타 서류가 그 제시일 후의 일자로 발행된 것도 하자가 된다.⁷⁷⁾ 보증상 제시된 서류가 그 제시일 후에 발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로서) 원보증상 일치하는 지급청구를 받았음'을 표시하는 내용의 보강진술에 의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73) Goode, *op. cit.*, p.92; 오원석·허해관·김중년 공역, 전게서, 106면; N. D. George, "URDG 758: Some reservations - Four report on guarantee and the URDG revision," DCInsight, Vol.16 No.2(April-June, 2010); Glenn Ransier, "URDG 758 has benefits for all parties - Four reports on guarantees and the URDG revision," DCInsight Vol. 16 No.2 (April-June 2010); 채진익, "URDG 하의 지급청구를 위한 제시요건과 그 일치성 기준," 『무역상무연구』 제50권(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14면.

74) URDG758 제15조 제c항은 이를 명시하며, 조문에서 위와 같은 예시를 두고 있다.

75) URDG758 제15조 제d항 제1문.

76) 동지, 박세운·한기문·한재필·허해관, 전게서, 151-152면.

77) URDG758 제15조 제d항 제2문.

2. 제3자가 발행한 서류

보증에서 보증의뢰인의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로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3자가 발행한 진술서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그러한 서류가 필요서류로 제시되어야 한다.⁷⁸⁾ 이러한 서류의 경우에, 보증인은 보증에서 요구된 제3자가 그 발행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에 기재된 불이행에 관한 내용이 보증에서 요구된 바에 일치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⁷⁹⁾ 후자의 심사에 관하여, 예컨대, 보증에서 제3자의 진술서나 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단지 일반적인 표현으로 명시한 경우에, 일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보증인은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재량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⁸⁰⁾

그러나 청구보증의 독립성에 따라,⁸¹⁾ 보증인이 진술서나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적 진실인지를 확인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⁸²⁾ 같은 맥락에서, 수익자로서는 만약 제3자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서나 증명서를 입수하여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서류나 실제적 증거를 통하여 보증의뢰인의 불이행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제3자의 서류의 입수하지 못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은 수익자가 부담한다.⁸³⁾

3. 법원의 판결서 또는 중재판정서

보증에서 법원의 판결서나 중재판정서를 필요서류로 제시하도록 명시하는

78) 위와 같이 제3자가 발행한 서류도 제시되어야 하는 보증의 경우에는 리스크 배분의 측면에서 수익자의 부담이 위 단순청구보증보다 크다(오원석·김필준·이운창, 전계논문, 148면).

79) 오원석·김필준·이운창, 전계논문, 149면에 의하면, 제3자가 발행한 서류가 제시되는 보증의 경우에 서류심사가 보다 복잡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보증은행의 입장에서는 서류심사의 부담이 적은 단순청구보증을 더 선호한다고 한다.

80) 동지, Bertrams, *op. cit.*, pp.292-293.

81) URDG758 제5조 제a항 참조.

82) 동지, Bertrams, *op. cit.*, p.293.

83) *Ibid.*

경우가 있는데,⁸⁴⁾ 이때 제시되는 판결서나 중재판정서는 기초계약상 보증의뢰인과 수익자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⁸⁵⁾ 또한 보증의뢰인이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하여 기초계약상 일정한 금액(대표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 또는 판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단지 판결이나 판정의 이유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보증의뢰인의 계약위반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observations)을 포함하고 있는 판결서나 중재판정서는 책임판계가 확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증인이 그러한 판결이나 판정을 평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⁸⁶⁾ 그러나 판결서나 중재판정서는 수익자가 보증상 지급청구권이 있음이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이를 원칙적으로 긍정하는 견해와 보증상 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지급조건이 아니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그러나 보증인은 판결서나 중재판정서의 유효성에 대하여 면책되며,⁸⁷⁾ 같은 맥락에서, 그러한 판결이나 중재판정에 대하여 해당 절차법상 불복절차가 소진되지 아니하여, 예컨대, 판결의 상소심이 진행 중이거나 상소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 혹은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그에 관하여 보증상 달리 명시된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예컨대 보증에서 확정판결서를 제시하도록 명시한 경우, 수익자는 그 판결에 대하여 더 이상 상소할 수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⁸⁸⁾

84) 위와 같이 판결서나 중재판정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전처분을 풀기 위한 목적의 재판보증(judicial guarantee)의 경우에 많으며, 특히 공공 또는 민간부분 국내건설프로젝트에서 흔히 볼 수 있으나, 국제무역거래에서는 드물다(오원석·김필준·이운창, 전 계논문, 149면).

85) 주의할 것으로 여기의 판결이나 중재판정은 수익자와 보증인 사이의 사건에 대한 판결, 즉, 수익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상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86) 동지, Bertrams, *op. cit.*, p.294.

87) URDG758 제27조.

88) 동지, Bertrams, *op. cit.*, pp.295-296.

4. 서류의 언어

보증상 제시되는 서류는 당해 보증에서 지정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나, 서류의 언어에 대하여 보증에서 침묵한 경우에, 보증상 지급청구나 보강진술을 포함하여 수익자나 그 대리인이 작성한 서류들은 당해 보증의 작성에 사용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되,⁸⁹⁾ 수익자나 그의 대리인 이외의 자가 발행하는 서류는 그와 같은 보증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⁹⁰⁾

V. 보증금액과 청구금액 및 보증금의 지급

1. 보증금액과 그 감액⁹¹⁾

보증인은 수익자에 대하여 오직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의무를 부담하는 바,⁹²⁾ 청구보증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최대보증금액과 그 통화가 명시된다.⁹³⁾ 다만 실무상 보증에서는 흔히 보증금액의 감액을 명시하는 조항(“보증금액 감액조항”)을 두는바,⁹⁴⁾ 이는 대개 기초계약의 진척에 따라 최대보증금액이 감액되는 체계를 취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선수금환급보증을 들 수 있는데, 이 보증에서는 보증의뢰인(수주자)이 선수금의 가액에 상당하는 정도로 공정(工程)이 진행되면 보증금액이 영이 되는 것으로 명시된다.⁹⁵⁾ 그에 따라

89) URDG758 제14조 제g항 제1문.

90) URDG758 제14조 제g항 제2문.

91) 물론 보증금액의 증액을 예기(豫期)하는 보증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실무상 보편적인 보증금액의 감액만을 거론한다. 예컨대,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는 지급보증에서는 대출이자의 증대에 따라 보증금액이 증액되는 것으로 명시한다.

92) URDG758 제12조.

93) Betrams, *op. cit.* p.104.

94) Betrams, *op. cit.* p.105.

95) 오원석·송정남·윤영미, 전계논문, 84면. 보증상 보증금액 감액조항은 서류적 조건(documentary condition)의 형태로 명시되며, 이때 당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보증금액은 감액되지 않는다(*Ibid.*).

보증금액이 감액되면 보증인은 그렇게 감액된 한도 내에서 의무를 부담하고 수익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지급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보증금액의 감액에 의하여 보증금액이 소진되어 결국 영(zero)이 된다면 보증은 종료되고, 이는 보증장의 반환여부를 가리지 않는다.⁹⁶⁾

2. 청구금액

수익자가 “보증상 이용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과다 청구”)은 그 자체로 불일치한 지급청구가 되며,⁹⁷⁾ 이는 설령 기초계약상 실제손해액이 실제로 그러한 보증금액보다 많고 수익자가 그러한 사실을 손쉽게 입증할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다.⁹⁸⁾ 또한 지급청구서에 기재된 보강진술서에 표시된 지급청구금금액의 총액이나 필요서류로 함께 제출된 보강진술서에 표시된 지급청구금금액의 총액에 비추어 볼 때 지급청구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도 이는 불일치한 지급청구가 된다.⁹⁹⁾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보강진술(서) 등의 서류에 표시된 금액이 지급청구금액보다 많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불일치한 지급청구가 아니다. 기초계약상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담보하는 보증(일부보증)의 경우에는 제시된 서류(지급청구서 제외)상 금액이 보증금액보다 많게 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⁰⁾

한편, 보증상 이용가능한 보증금액의 전부가 아니라 단지 일부만을 청구하는 것을 일부청구라 하는바, 보증에서 일부청구의 가부에 대하여 침묵한 경우에, 일부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¹⁰¹⁾ 다만 보증에서 일부청구가 금지

96) URDG758 제25조 제b항 제ii호. 그러나 국내법에 따라서는 그 강행법규에 의하여 보증금액이 전부 지급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보증이 종료되지 않으며, 그에 더하여 보증장이 보증인에게 반환 또는 폐기 등이 요구되기도 한다(Goode, *op. cit.*, p.88; 오원석·허해관·김중년 공역, 전계서, 101면).

97) URDG758 제17조 제e항 제i호.

98) URDG458상의 동일한 취지의 논의로 Goode, *op. cit.*, pp.40, 84; 오원석·허해관·김중년 공역, 전계서, 43-44면, 95면 참조.

99) URDG758 제17조 제e항 제ii호.

100) 박세운·한기문·한재필·허해관, 전계서, 156면.

101) URDG758 제17조 제a항.

된다고 명시한 때에는 오직 일회의 전부청구만이 허용된다. 일부청구에 따라 보증금이 일부지급이 이루어지면, 향후 “이용가능한 보증금액”은 그만큼 감소된다.¹⁰²⁾ 이러한 일부지급의 누적에 따라 그 보증금액이 소진되면 보증이 종료한다.¹⁰³⁾ 보증금의 일부지급에 의하여 보증금액은 자동적으로 감액되고, 이를 위하여 보증 조건변경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된다.¹⁰⁴⁾ 또한 이때에도 위와 같이 보증의 종료를 위하여 보증장의 반환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3. 보증금 지급시기

보증금의 지급시기로서, 보증인은 지급청구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것이 “일치하는 지급청구라고 결정하는 때”에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¹⁰⁵⁾ 그 구체적인 시기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생각건대, 보증인이 ‘당해 지급청구를 일치하는 지급청구로서 수리하겠다고 통지하는 일자’ (“수리통지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⁰⁶⁾ 이와 같이 보증금의 지급시기는 지급청구가 이루어진 일자, 즉, 지급청구일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¹⁰⁷⁾

한편, 보증인이 허용된 심사기간인 5영업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지급거절통지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지급거절권을 상실함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하는데,¹⁰⁸⁾ 이러한 경우에 지급시기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생각건대, 그 심사기간의 만료일, 즉, 제5영업일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¹⁰⁹⁾

102) URDG758 제25조 제a항 제i호.

103) URDG758 제25조 제b항 제ii호.

104) URDG458상의 동일한 취지의 논의로, Goode, *op. cit.*, p.88; 오원석·허해관·김중년 공역, 전게서, 101면 참조.

105) URDG758 제20조 제b항.

106) 동지, 박세운·한기문·한재필·허해관, 전게서, 164면.

107) *Ibid.*

108) URDG758 제24조 제f항.

109) 동지, 박세운·한기문·한재필·허해관, 전게서, 164면.

4. 보증금 지급장소

보증상 다른 명시가 없는 경우에, 보증금은 당해 보증을 발행한 보증인의 지점(支店)(혹은 영업소), 즉, 보증의 발행지에서 지급되어야 한다.¹¹⁰⁾ 보증상 다른 지급장소가 표시된 때에는 그러한 표시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인바, 그러한 표시가 배타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때에는 그렇게 표시된 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하되, 비배타적(즉, 추가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때에는 보증인은 수익자가 선택한 장소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¹¹¹⁾

5. 지급통화

지급통화의 문제로서,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보증상 명시된 통화(“보증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¹¹²⁾ 실무상 보증에서는 보증금액과 그 지급통화(즉, 보증통화)가 기재되는데,¹¹³⁾ 이때 지급통화는 수익자가 원하는 통화로 기재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수익자가 원하는 통화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화가 아닐 때에는 통상 USD나 EUR 등의 통화가 합의하에 기재·이용된다.¹¹⁴⁾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통제 밖에 있는 장애로 인하여 보증통화에 의한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지급장소의 법률상 보증통화에 의한 지급이 불법인 경우에 보증인은 전술한 “지급장소”(place of payment)¹¹⁵⁾의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¹¹⁶⁾ 이는 설령 보증에서 오직 보증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¹¹⁷⁾ 예컨대, 개발도상국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110) URDG758 제20조 제c항.

111) 동지, 박세운·한기문·한재필·허해관, 전게서, 164면.

112) URDG758 제21조 제a항.

113) Betrams, *op. cit.* p.104.

114) 박세운·한기문·한재필·허해관, 전게서, 164면.

115) 여기의 “지급장소”(place of payment)는 이를 위반하면 당해 지급청구를 불일치한 지급청구로 만드는 중요한 요건이다.

116) URDG758 제21조 제b항 제i호, 제ii호.

117) *Ibid.*

처한 국가가 외환관리법이나 긴급조치를 통하여 자국의 외환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와 같이, 보증인이 자체 외화자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정부에 의하여 보증통화를 외화로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기도 하는바, 이와 같이 보증통화로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보증인은 지급장소의 통화인 자국의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¹¹⁸⁾ 나아가 수익자가 보증통화 대신에 지급장소의 통화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지의 문제나 보증인이 지급장소의 통화로 지급할 ‘권리’가 있는지가 문제에 대하여 URDG758은 침묵하고 있으며, 이는 당해 보증의 준거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¹¹⁹⁾

위와 같이 보증인이 보증통화가 아닌 지급장소의 통화의 통화로 지급을 이행하는 경우에, 어느 시점의 환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보증인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때에 그 지급장소에서 통용되는 적용가능한 환율”, 즉, “지급시”의 환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¹²⁰⁾ 그러나 보증인 으로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누리고자 보증금의 지급시기를 임의로 조절하고자 할 우려가 있는바, 지급기한 내에 보증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수익자는 그 지급기한시점이나 실제지급시점에 통용되는 환율 중에서 어느 환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수익자의 적용환율 기준시점의 선택권).¹²¹⁾

VI. 결 론

위 본문에서 보듯이, 보증상 지급청구권의 주체는 오직 수익자이며, 따라서 대리인이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청구서(불이행진술서 포함)의

118) 동지, 박세운·한기문·한재필·허해관, 전게서, 164-165면.

119) 동지, 박세운·한기문·한재필·허해관, 전게서, 167면. 참고로 이와 같이 계약상 금전 채무자가 계약통화 외의 통화로 금전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대용급부권”이라 하며, 그 채권자가 계약통화 외의 통화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대용급부청구권”이라 한다(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박영사, 2010), 444면 참조).

120) URDG758 제21조 제c항.

121) URDG758 제21조 제c항 제2문.

발행은 수익자만이 할 수 있다. 일치하는 지급청구가 되기 위하여 지급청구는 보증의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바,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보증의 발행시부터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여기의 보증발행시점은 보증이 보증인의 통제를 벗어나는 때이다. 지급청구서류는 보증이 만료되기 전에 지급청구 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한편 수익자는 보증상 명시된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에서 지급청구를 하여야 하되, 다른 명시가 없는 경우에 지급청구는 보증의 발행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급청구는 서류제시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여기의 서류는 전자서류를 포함하므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지급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보증에서 지급청구를 종이서류 또는 전자서류로 하여야 하는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수익자는 종이서류로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시서류에 관하여, 지급청구는 보증상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보증의뢰인의 기초관계상 의무위반의 내용을 표시하는 수익자의 보강진술에 의하여 보강되어야 하되, 다만 여기의 보강진술은 그 지급청구서 내에 기재될 수도 있고, 그 지급청구서에 첨부되거나 특정적으로 연결되는 별도의 서명된 보강진술서에 기재될 수 있다. 보증에서 제3자가 발행한 서류에 기재된 불이행진술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이 보증에서 명시되지 않았거나 단지 일반적인 표현으로 명시된 경우에, 일치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보증인은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재량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증의 독립성에 따라, 보증인은 진술서나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적 진실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

실무상 청구보증에서는 최대보증금액과 그 통화가 명시되고, 흔히 보증금액 감액조항이 서류적 조건의 형태로 삽입되며, 수익자가 보증상 이용가능한 금액을 초과하여 과다청구를 하는 것은 불일치한 지급청구가 된다. 그러나 보증에서 일부청구의 가부에 대하여 침묵한 경우에, 일부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그에 따라 보증금이 일부지급이 이루어지면 향후 “이용가능한 보증금액”은 그만큼 감소되고, 일부지급의 누적에 따라 “이용가능한 보증금액”이 소진되면 보증이 종료한다.

보증인은 지급청구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것이 “일치하는 지급청구라고 결정하는 때”에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보증인은 지급청구에 대한 수리통지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보증인이 허용된 심사기간인 5영업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지급거절통지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심사기간의 만료일, 즉, 제5영업일이 곧 지급시기이다. 보증금은 당해 보증을 발행한 보증

인의 지점(支店)(혹은 영업소)에서 지급되어야 하되, 만약 보증상 다른 지급장소가 표시된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보증상 명시된 통화(“보증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되, 예외적으로 지급장소의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보증인이 보증통화가 아닌 지급장소의 통화의 통화로 지급을 이행하는 경우에 지급시의 환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되, 만약 보증인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수익자는 그 지급기한시점이나 실제지급시점에 통용되는 환율 중에서 어느 환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고는 최근에 개정·시행된 URDG758하에서 청구보증상 지급청구와 그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에 관한 다양한 논점들을 고찰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청구보증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국제적 통일규칙인 URDG758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이해와 관심이 증대되고 나아가 청구보증의 실무상 활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신국, “독립적 보증 및 스탠바이 신용장에 관한 UN협약,” 『비교사법』 제3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6.
- 박석재, “독립적 보증 및 스탠바이 신용장에 관한 연구 - 1995년 유엔 협약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1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8.
- _____, “독립적 보증 및 스탠바이 신용장에 관한 UN협약,” 『상사법연구』 제22권 제5호, 한국상사법학회, 2004.
- _____, “국제비즈니스계약에서의 보증수단 및 유형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
- 박세운, 『ICC 청구보증통일규칙』, 대한상공회의소 · ICC Korea, 2007.
- 박세운 · 한기문 · 김상만 · 허해관, 『보증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 대한상공회의소 · 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 2008.
- 박세운 · 한기문 · 한재필 · 허해관, 『ICC 청구보증통일규칙』, 대한상공회의소 · ICC Korea, 2010.
- 박세운 · 한기문 · 허해관, “개정 『청구보증통일규칙』의 주요내용,” 『국제상학』 제25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10.
-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 오원석 · 김필준 · 이운창, “청구보증상 지급메커니즘에 따른 실무상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제4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 오원석 · 송정남 · 윤영미,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독립보증계약 체결시 당사자의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5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10.
- 오원석 · 허해관 · 김중년 공역(Roy Goode 저), 『국제상업회의소 청구보증통일규칙 가이드』, 도서출판 두남, 2008.
- 채진익, “URDG 하의 지급청구를 위한 제시요건과 그 일치성 기준,” 『무역상무연구』 제5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 Affaki, Georges, *ICC Uniform Rules on Demand Guarantees: A User's Handbook to the URDG*, ICC, 2001.
- _____, “The shape of the new URDG,” *DCLInsight*, Vol.15, No.3, 2009.

- Bertrams, Roeland F., *Bank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de*, Third revised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 Ellinger, Peter & Dora Neo, *The Law and Practice of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Hart Publishing, 2010.
- George, N. D., "URDG 758: Some reservations - Four report on guarantee and the URDG revision," *DCInsight*, Vol.16 No.2, April-June, 2010.
- Goode, Roy, *Guide to the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1992.
- _____, "The main issues in the URDG revision," *DCInsight*, Vol.15, No.1, 2009.
- Byrne, James E., *The Officia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1998.
- Ransier, Glenn, "URDG 758 has benefits for all parties - Four reports on guarantees and the URDG revision," *DCInsight* Vol. 16 No.2, April-June, 2010.

ABSTRACT

Demands and Payments under Demand Guarantees – Focused on the URDG 758

Heo, Hai Kwan

This article examines two important issues of the demand for payment by the beneficiary and the payment by the guarantor to the beneficiary under the revised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URDG) published by ICC, which are called URDG 758 and effected on July 1, 2010. Here, after first briefly defining the concept and nature of the demand for payment, this article discusses various issues surrounding the demand: By whom, where and how the demand has to be made; which documents are required in demanding the payment; how much amount can be demanded and paid; when and where the payment has to be made and which currency has to be used for the payment.

The demand for payment has to be made by the beneficiary to the guarantor on or before expiry of the guarantee at the place of issuance of the guarantee unless any other place is specified in the guarantee. The demand has to be made in paper form unless the guarantee requires an electronic form.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ipulated in the guarantee, the demand must be supported by a statement by the beneficiary indicating the applicant is in breach of the underlying contract. Also the demand must identify the guarantee under which it is made, and the time for examination by the guarantor starts on the date of identification.

The demand cannot be for more than the amount available under the guarantee. When the demand is complying the guarantor must pay the amount demanded. The payment has to be made at the branch or office

of the guarantor that issued the guarantee unless any other place is indicated in the guarantee. The payment has to be made in the currency specified in the guarantee, unless the guarantor is unable to make payment in that currency due to an impediment beyond its control or any illegality under the law of the place for payment. In case of "extend or pay" or "pay or extend" demands, the demand is deemed to be withdrawn if the extension is granted. But if not, the demand has to be paid without any further demand by the beneficiary.

Key Words : Demand Guarantee, URDG, Independent Guarantee,
Demand for Payment